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8. 13 선고 2020나5665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정관

피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석

변 론 종 결 2021. 7. 9.

판 결 선 고 2021. 8. 13.

제1 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4. 22. 선고 2019가단240937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C 사이에 2016. 8. 11. 체결된 증여계약을 61,753,876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61,753,87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 7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피고와 C 사이에 2016. 8. 11. 체결된 증여계약을 80,000,000원의 범위 내에 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1) 대여금채권 발생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는 C에 대하여 80,000,000원(=130,000,000원-50,000,000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위 대여금채권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피고의 변제 항변

가) 피고는, 원고가 C, D로부터 합계 130,870,000원을 변제받아 위 대여금채권이 모두 변제되었고, 설령 그 중 일부를 이자의 변제로 보더라도 원고가 이자제한법상 금전대차에 관한 최고이자율 연 24%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수취한 52,846,400원은 원금 변제에 충당되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원고의 대여금채권은

27,153,600원(=80,000,000원-52,846,400원)이라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D가 2016. 11. 12. 원고의 대여금 130,000,000원 중 원금 50,0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약정에서 D가 운영 중인 유흥주점의 월 결산 영업이익 중 1/3이 이자 3,0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C, D는 2015. 11. 16.부터 2017. 7. 18.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이자 및 이익금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80,87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순번	송금일	송금액
1	2015. 11. 16.	1,227,500원
2	2015. 12. 17.	11,435,500원
3	2015. 12. 24.	4,560,000원
4	2016. 1. 15.	5,291,500원
5	2016. 1. 19.	10,430,000원
6	2016. 2. 15.	9,330,000원
7	2016. 2. 22.	588,500원
8	2016. 3. 22.	6,830,000원
9	2016. 3. 24.	4,113,000원
10	2016. 4. 21.	64,000원
11	2016. 5. 21.	3,000,000원
12	2016. 6. 28.	3,000,000원
13	2016. 8. 2.	4,000,000원
14	2016. 8. 12.	1,000,000원
16	2017. 1. 3.	4,000,000원
17	2017. 3. 4.	4,000,000원

18	2017. 3. 24.	2,000,000원
19	2017. 4. 24.	2,000,000원
20	2017. 6. 2.	2,000,000원
21	2017. 7. 18.	2,000,000원
합계		80,870,000원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대여금채권은 원금 50,000,000원 이외에 추가로 80,870,000원이

변제되었으나, 위 80,870,000원은 원금이 아닌 이자 및 이익금 변제를 위하여 지급된 금원이므로, 위 금원 지급으로 원고의 대여금채권 원금이 모두 변제되었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이자제한법에 따라 위 80,870,000원이 이자 이외에 원금 변제에도 충당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아래에서 살펴본다.

다) 이 사건 약정 당시 시행되던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7. 11. 7. 대통령령 제28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이고, 이자제한법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금전의 대차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받은 것은 이를 이자로 본다. 그러므로 원고가 지급받은 위 80,870,000원에 포함된 영업에 따른 이익금도 대여와 관련하여 받은 것으로서 이자로 봄이 타당하고, 위 80,870,000원 중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 25%를 초과하는 부분은 원금의 변제에 충당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원고가 지급받은 130,870,000원(=50,000,000원+80,870,000원)을 원고의 대여금채권 변제에 충당하면 별지 변제충당표 기재와 같이 2017. 7. 18. 기준으로 원고의 C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원금 30,951,136원이 남는다.

라) 한편,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참조). 그러므로 원고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C에 대한 대여금채권액은 위 원금 30,951,136원과 이에 대한 2017. 7. 18.부터 이 사건 변론 종결일인 2021. 7. 9.까지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 25%로 계산한 이자 30,802,740원 합계금 61,753,876원이다. 따라서 피보전채권인 원고의 C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61,753,876원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른 금전거래의 성격이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금이므로 이 사건 약정에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호증의 기재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약정은 이자제한법 적용 대상인 금전소비대차계약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이 사건 약정 당시 작성된 처분문서의 명칭이 ‘차용증’이고, 당사자를 ‘채무자’, ‘채권자’로 표기하였다.

② 이 사건 약정에서 차용기간 3년, 매월 이식 3,000,000원을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였는데, 이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인 대여에 있어서 변제기 및 이자 약정에 해당한다.

③ 이 사건 약정에 의하면 유흥주점이 결손을 보거나 영업을 지속할 수 없게 되더라도 위 이식 및 원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원고는 유흥주점의 영업에 따른 위험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나. 사해행위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가액배상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증여계약은 피보전채권인 61,753,876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61,753,87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황정수, 판사 장성훈, 판사 최수진

별지 변제충당표

순번	대여일시	대여금	원금액(환원전)	이자 기산일	이자 종료일	이자 일수	발생이자	원계일시	원계금	이자충당	원금충당	잔존원금	잔존이자
1	15-11-6	130,000,000	130,000,000	15-11-6	15-11-16	11	979,452	15-11-16	1,227,500	979,452	248,048	129,751,952	0
2			129,751,952	15-11-17	15-12-17	31	2,755,007	12-12-17	11,435,500	2,755,007	8,680,493	121,071,459	0
3			121,071,459	15-12-18	15-12-24	7	580,479	15-12-24	4,580,000	580,479	379,521	120,691,938	0
4			120,691,938	15-12-25	16-1-15	22	1,818,645	16-1-15	5,291,500	1,818,645	3,472,855	117,219,083	0
5			117,219,083	16-1-16	16-1-19	4	321,148	16-1-19	10,430,000	321,148	10,108,852	107,110,231	0
6			107,110,231	16-1-20	16-2-15	27	1,990,805	16-2-15	9,330,000	1,990,805	7,349,195	99,761,036	0
7			99,761,036	16-2-16	16-2-22	7	478,306	16-2-22	588,500	478,262	110,238	99,650,798	44
8			99,650,798	16-2-23	16-3-22	29	1,979,365	16-3-22	6,830,000	1,979,409	4,850,591	94,800,207	0
9			94,800,207	16-3-23	16-3-24	2	129,861	16-3-24	4,113,000	129,861	3,983,137	90,817,070	0
10			90,817,070	16-3-25	16-4-21	28	1,741,697	16-4-21	64,000	64,000	0	90,817,070	1,677,697
11			90,817,070	16-4-22	16-5-21	30	1,866,104	16-5-21	3,000,000	3,000,000	0	90,817,070	543,801
12			90,817,070	16-5-22	16-6-28	38	2,363,731	16-6-28	3,000,000	2,307,532	92,468	90,724,602	0
13			90,724,602	16-6-29	16-8-2	35	2,174,904	16-8-2	4,000,000	2,174,904	1,825,096	88,899,506	0
14			88,899,506	16-8-3	16-8-11	9	548,010	16-8-11	50,000,000	0	50,000,000	38,899,506	548,010
15			38,899,506	16-8-12	16-8-12	1	26,643	16-8-12	1,000,000	574,653	425,347	38,474,159	0
16			38,474,159	16-8-13	17-1-3	144	3,794,711	17-1-3	4,000,000	3,794,711	205,289	38,268,870	0
17			38,268,870	17-1-4	17-3-4	60	1,572,893	17-3-4	4,000,000	1,572,893	2,427,307	35,841,563	0
18			35,841,563	17-3-5	17-3-24	20	490,980	17-3-24	2,000,000	490,980	1,509,020	34,332,543	0
19			34,332,543	17-3-25	17-4-24	31	728,978	17-4-24	2,000,000	728,978	1,271,022	33,061,521	0
20			33,061,521	17-4-25	17-6-2	39	883,150	17-6-2	2,000,000	862,823	1,117,177	31,944,344	327
21			31,944,344	17-6-3	17-7-18	46	1,006,465	17-7-18	2,000,000	1,006,792	993,208	30,951,136	0
22	총 대여금	130,000,000						총 변제금	130,870,000				

